

제3차산업경제위원회
2019.11.26.(화) 14:00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임영은 의원 등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9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3. 제안 이유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매 5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4조)

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실시(안 제6조)

마.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초에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함.